

프랜차이즈업체

우리업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인력난과 장기적인 발전계획 부재다. 특히 인력난은 질 좋은

생산직근로자 임금 현황

은 제품의 생산 및 개발, 총매출과 생산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인력 관리비용 증가를 가져와 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지는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해 봤다. 물론 프랜차이즈업체와 원도우베이커리는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산성, 노동강도, 근로조건 등이 틀리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은 못된다. 그러나 원도우베이커리에 비해 비교적 체계가 잘 잡혀있는 프랜차이즈업체들의 급여구성 내역이나 복리후생 등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업체의 현실을 아는 데 의미가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생산직근로자 얼마나 받나

프랜차이즈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초임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기준으로 65~70만원 선이다. 원도우베이커리에서 제과일을 처음 시작하는 기술자의 초임이 45~50만원 선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기본급 보다는 각종 수당이 급여내역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루 8시간, 토요일 4시간, 주 44시간 근로를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이를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모두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월차,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년에 한번씩 연말정산을 한다. 또 근무연수가 많아지거나 직책을 맡게 되면 별도의 수당을 받으며 연간 600% 정도의 상여금도 받는다.

특히 연장근무의 경우 대부분 업체가 주당 44시간인 정상근무외에도 하루에 2~4시간 정도 작업시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런 연장근로는 당일의 작업물량을 감안해 유동적으로 정하는 업체도 있지만 처음부터 연장근무시간을 정해 놓고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도 한다. 신라명과는 주당 4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4시간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파이크라상은 자동적으로 하루 평균 4시간을 연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주당 44시간 근무,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무수당 지급

만약 야근을 하지 않고 정해진 근무시간에만 일을 한다면 기본급외에 회사별로 책정돼 있는 수당만을 받을 뿐이다. 그러나 원도우베이커리의 근무시간도 하루 평균

10~12시간 정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프랜차이즈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초임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면 이들이 받는 기본급외의 급여내역을 살펴보자.

우선 각종 수당이 있다. 현재 업체마다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당은 자격증 수당과 가족수당, 직책수당이 있다.

자격증 수당은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크라운베이커리, 고려당은 제과와 제빵분야 각각의 자격증을 모두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에 신라명과, 뉴욕은 두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해도 한가지만 인정한다. 이밖에 뉴욕제과는 기능사외에도 기능장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별도수당을 책정해 5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액수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

또 가족수당이 있다. 부모가 생존해 계신 경우와 결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수당을 받는다. 업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부모 각 1만원, 배우자 1만원~1만 5,000원, 자녀 2인기준 각 5,000~1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어 가족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만원 정도다.

이외에도 직책수당이라는 것이 있다. 관리직의 직책이 일반적으로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의 순으로 승진을 하는데 비해 생산직은 업체마다 부르는 직책 명칭에 약간씩 차이가 난다.

크라운베이커리는 처음 입사를 하면 기능사부터 시작하고 반장, 직장, 지정, 기성의 순으로 높아진다. 기능사가 반장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 5년이 필요하다. 이때가 되면 승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후 반장에서 직장이 되는데는 4년이 필요하고 직장에서 지정은 7년, 지정에서 기성은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이에따른 직책수당을 보면 반장이 2만원, 직장이 3만원, 지정이 5만원이다.

이는 다른 업체도 비슷한 수준이다.(표 참고. 괄호안에 쓰인 숫자는 정기승급에 필요한 기간인데 예를들면 기능사(5년)-반장으로 표시된 것은 기능사에서 반장이 되는데 필요한 기간이 5년이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장기근속자에게는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근속수당은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그때부터 얼마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근무연수가 높아짐에 따라 수당도 많아진다. 한편 수당은 아니지만 업체에서는 근속연수가 많은 사원들에게 회사가 마련한 선물을 주기도 한다. 종류는 주로 금반지가 많은데 5년이나 10년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업체마다 지급방식에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상여금도 있다. 상여금은 현재 크라운베이커리와 고려당이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고 파이크리상, 신라명파, 뉴욕제과가 기본급만으로 상여금을 주고 있다.

한편 업체별로 실시하는 복지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급여외에도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기본적인 복리후생은 물론이고 자녀 2인에 한해서 중,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회사에서 지원한다. 또 신라명파는 주택을 구입할 때 10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800만원, 5~10년 미만인 사람은 600만원씩을 무이자로 36개월 동안 융자해준다. 또 파이크리는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입학축하금과 학업장려금으로 각각 20만원을 준다.

급여내역은 기본급 외에 가족, 직책, 자격 등 각종 수당포함

한편 프랜차이즈업체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임금상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호봉승급인데 대부분 업체가 1년에 두번씩 자동적으로 호봉을 인상한다.

그러나 호봉 승급에 따른 임금차이는 그리 큰 편이 아니다. 대부분이 처음 입사를 하면 1호봉 당 5,000~7,000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리고 반장 정도가 되면 호봉차이가 1만원 정도다. 따라서 일년에 호봉에 따른 임금변동은 1~2만원 정도다.

또 한가지는 일년에 한번씩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이 모인 가운데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임금협상이다. 이때는 통상적으로 인상폭이 8~10% 정도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인상률에 비해 인상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그 이유는 기본급에 인상률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40만원인 근로자가 그 해에 임금인상률이 10% 정도라면 실질적인 인상액은 4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임금상승폭이 큰 편이 아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급여는 해가 지날수록 일반제과점에 근무하는 기술인과 비교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제과점에 비해 프랜차이즈의 경우 기계자동화 정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숙련된 기술자에 대한 의존도가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일반제과점이 프랜차이즈에 비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기술적인 성장을 할 수 있어 초보자들이 일반제과점을 선호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또 일반제과점의 노동강도도 임금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무튼 이같은 이유로 몇몇 프랜차이즈업체는 인력난을 겪고 있고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공장이 있는 지역에서 부녀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한편 일반제과점도 기술인들의 복지에 점점 관심을 돌리고 있는 추세다. 한달에 2~4번 정도 정기휴무를 실시하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고 구정이나 추석 등 명절에 100~200% 정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제과점도 점점 늘고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금은 능력급으로 지급한다는 업소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처음 초봉은 45~50만원 정도로 낮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가 지날수록 능력에 따라 벌어지는 급여폭이 크다.

프랜차이즈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초임은 65~70만원 선이다. 이 금액은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과 연장 근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에 대해 한 업주는 “월급을 능력에 따라 지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뺨을 만드는 일이 개인의 소질이나 노력 여하에 따라 발전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똑같이 기술을 배워도 어떤 사람은 시간당 10개밖에 못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2, 3배의 일을 한다. 그들을 똑같은 수준으로 대우할 수는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제과 특성상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능력에 따른 평가’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항상 남을 수밖에 없다.

한편 프랑세즈 인터내셔널 이종성 사장은 “급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안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제과점에서 사람이 모자란다고 해서 제과점의 총매출이나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을 준다면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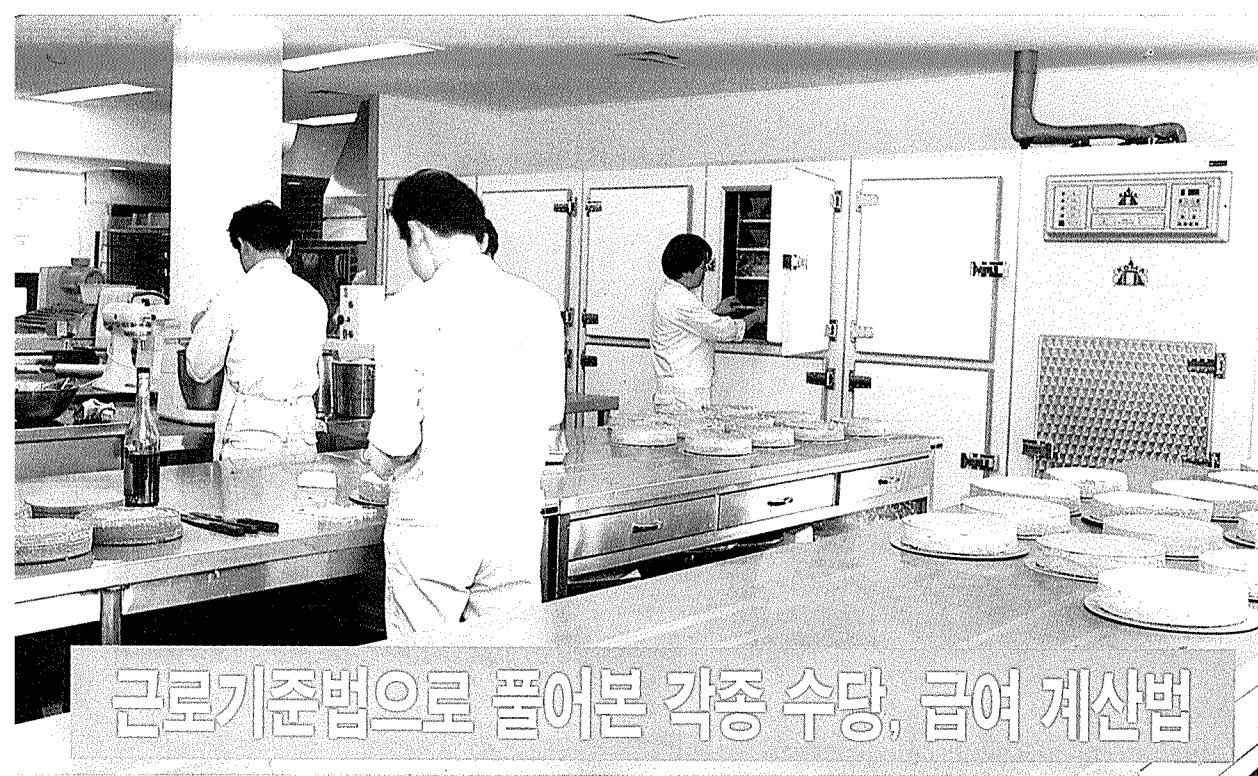
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제과점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사원들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매력을 느끼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유인책이 될 수 있겠지만 제과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임금지출은 소용이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프랜차이즈업체와 원도우베 이커리는 단순한 비교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들의 근무여건을 살펴봄으로써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는 것도 경영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본다.

프랜차이즈업체 생산직 근로자 임금현황

	크라운베이커리	고려당	파리크라상	신라명과	뉴욕	
근로기준	근로시간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주간 07:00~19:00 야간 19:00~명일 07:00 (주 4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시간외 근무는 고정수당으로 지급)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외에 주당 4시간 자동연장 근로 실시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월휴무	2일	4일	주 1일	5일	4~5일
	정기휴가	4일	3일	4일	6일	5일
	연월차휴가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근거
화력별 초임	고졸남자(기능사 4호봉) 기본급 : 442,430원 특별근로수당 : 22,000원 위생수당 : 10,000원 전문대졸 남자 기본급 : 469,200원 특별수당 : 22,000원 위생수당 : 10,000원	고졸(7급 67호봉) 기본급 : 430,000원 (시급 1,822원) 전문대졸 기본급 : 460,000원 대졸 기본급 : 530,000원	고졸 남자(91급 1호봉) 기본급 : 375,000원 생산장려수당 : 50,000원 자동연장수당 : 325,000원	고졸근팔남자(5급 24호봉) 기본급 : 429,200원 조정수당 : 35,800원 연장근로수당 : 49,380원 전문대졸근팔남자(4급 27호봉) 기본급 : 489,100원 조정수당 : 40,800원 연장근로수당 : 56,280원	고졸남자 기본급 : 372,900원 전문대졸남자 기본급 : 490,500원 조정수당 : 60,000원	
	기능사(5년) - 반장(4년) - 직장(7년) - 지정(4년) - 기성	사원(3년) - 반장(2년) - 주임(3년) - 대리(3년) - 파장(3년) - 파장(3년) - 차장(3년) - 부장	현장사원(1년) - 기능사원(2년) - 기사(1년) - 반장(3년) - 주임(3년) - 직장대행(3년) - 직장	사원(2년) - 반장(7년) - 대리(6년) - 파장(6년) - 차장(6년) - 부장	사원(7~8년) - 반장(3~4년) - 주임(3~4년) - 대리(3~4년) - 파장(2~3년) - 차장(3~4년) - 부장	
상여금	연 700% (통상 임금기준 : 기본급, 직급, 직무, 자격, 위생, 근속수당)	연 600% (통상임금 기준 : 기본급, 직책, 자격, 직무, 근속수당)	연 600% (기본급)	연 620% (기본급)	연 530% (기본급)	
수당	자격증 수당 제과, 제빵 각 20,000원 가족수당 배우자 18,000원 자녀(2인 이내) 각 10,000원 직책수당 근속수당 남자(3년 이상) 11,000원	자격증 수당 제과, 제빵 각 10,000원 가족수당 부모 각 10,000원 배우자 10,000원 자녀(2인 이내) 각 5,000원 직책수당, 근속수당(1년에 3,000원씩 증가), 직무수당	가족수당 자녀있을 경우 : 20,000원 직책수당	자격증수당 제과, 제빵 중 높은 것 선택 10,000원 가족수당 부모 10,000원 배우자 10,000원 자녀(2인 이내) 5,000원 직책수당	자격증수당 기능사 10,000원 기능장 50,000원 가족수당 부모 15,000원 배우자 15,000원 자녀(2인 이내) 10,000원 근속수당, 직책수당	
정기승급	1년에 2호봉		1년에 2호봉	1년에 2호봉	1년 3호봉	
퇴직금 (누진제를 중심으로)	4~6년 : 1개월, 6~8년 : 1.3개월, 8~10년 : 3개월 추가 지급 등	5년 이상 근무자부터 시행	7년 : 1개월, 8년 : 1.5개월, 9년 : 1.5개월 추가 지급 등	5~10년 미만 : 1개월 10년 이상 : 2개월 추가 지급 등	10년 : 2개월, 15년 : 3개월 추가지급 등	
복리후생	국민연금, 의료보험, 장학금(2인 이내) 중 고등학교 학비 지원, 주택구입 자금대출 등	국민연금, 의료보험, 장학금(2인 이내) 중 고등학교 학비 지원, 노래방, 세탁장 운영	국민연금, 의료보험, 장학금(2인 이내) 중 고등학교 학비 지원, 대학입학 축하금 20만원 하계휴양소 운영	국민연금, 의료보험, 장학금(2인 이내) 중 고등학교 학비 지원, 주택구입, 용자금, 소집단 활동 지원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장학금(2인 이내) 중 고등학교 학비 지원	

(1995. 8. 31일 현재 기준)



근로기준법으로 풀어본 각종 수당, 급여 계산법

현재의 근로기준법이 최초로 제정된 것은 1953년이다. 그후 몇차례 개정 후 1990년에 개정 공포된 법률이 오늘 까지 이르고 있다.

이 법은 헌법에 의거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관계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더 나은 조건을 맺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남녀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일가친척)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일컫는다. 또 근로자가 일한 댓가로 받게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고 하는데 임금은 일정한 날에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한달에 한번 이상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임금에는 기본급 또는 본봉이라고 부르는 기본임금과 직무, 직책, 가족수당 등 통상임금에 속하는 수당, 연장, 야근, 연차, 월차 등 법정수당, 상여금, 교통비 등 기타임금을 포함한다.

이중 통상임금은 기본임금과 근로자가 출근하면 당연히 받게되는 기타 임금을 말하는데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해고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1조)

한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받고 있는 일체의 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수당은 물론 상여금까지도 이에

포함된다. 퇴직금, 휴업수당,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사비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를 뺀 금액을 말한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 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줘야한다.

근로시간 외에도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한다. 이 휴가의외에도 한달간 개근한 근로자는 1월에 1일씩 월차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고 1년간 개근한 근로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사람은 8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월차유급휴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해 사용하거나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개근의 의미는 근로일수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시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 외출을 몇번 이상했다고 결근처리하는 것은 위법이다.

한편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 여성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줘야한다.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은 산전후를 통하여 60일간의 유급보호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퇴직할 때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그 예고를 해야한다.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사람, 2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해 사용된 사람, 월급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못한 사람,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사람,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는 예고해고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

각종 수당 급여 계산법

김영희 씨는 1만원의 기본임금(일당)과 하루 3,000원씩의 식대, 일주일에 한번씩 580원짜리 장갑 한켠레를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또 한 달에 3만원씩 직책수당도 받고 있다. 그녀의 임금을 계산해 보자.

1. 하루 통상임금

1만원(기본임금) + 3,000원(식사수당) + 하루직책수당(3만원÷30일) + 하루장갑사용료(580원÷7) = 10,000 + 3,000원 + 1,000원 + 80원 = 14,080원

2. 시간당 통상임금

14,080원÷8=1,760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는 위의 시간당 통상임금 1,760원을 시급으로 해서 계산한다. 이들 수당을 단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곳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임금이 1,250원이 나온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것에 비해 510원의 차이가 있다. 이를 한달로 환산하면 122,400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3. 연장, 야근근로수당

김영희씨가 아침 8시에 출근해 밤 11시까지 근무했다면 이날 받게되는 임금은?

오전8시 12시 오후1시 5시 7시 8시 밤10시 11시

기준근로	점심식사	기준근로	연장근로	저녁식사	연장근로	야근근로
------	------	------	------	------	------	------

아침 8시-오후 5시 기본임금 10,000원
 오후 5시-밤 10시 연장근로수당 1,750원×4시간(연장근로시간) ×1.5=10,500원
 밤 10시-11시 연장.야근근로수당 1,750원×1시간×2=3,500원
 합계: 24,000원

연장근로가 이어져 밤 10시 이후까지 계속되었다면 밤 10시이후부터는 연장근로와 야근근로가 모두 적용되어 연장, 야근근로수당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연장, 야근근로수당×2만큼을 지급받는다.

4. 휴일근로수당

김영희 씨가 일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받게되는 임금은?
유급휴일근로시 임금은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100%, 당해일 근로대가로 100%, 휴일근로수당으로 50%로 250%를 받아야 한다.

아침 8시-오후 5시 휴일근로수당 1,760원×8×1.5=21,120원
주휴수당 1,760×8=14,080원
합계 : 35,200원

5.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에서 3개월 이전부터 현재시점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분	2월	3월	4월
본봉	150,000	150,000	150,000
직책수당	12,000	12,000	12,000
가족수당	15,000	15,000	15,000
연장근로수당	42,187	15,000	25,625
야간근로수당	11,250	17,812	13,125
월차휴가수당	5,000	5,000	5,000
합계	235,43	244,812	230,750

*1994년 추석과 1995년 구정에 본봉의 100%씩 상여금을 받음
*1995년 2월에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50,000원을 받음

-상여금 상여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중 3/12만 임금총액에 가산한다.
(150,000+150,000)×3/12=75,000

-연차유급휴가수당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연차유급수당으로 받은 총액을 3/12로 나눈다.
50,000×3/12=12,500

-임금총액

235,437+244,812+230,750+75,000+12,500=798,499

-총일수 28일(2월)+31일(3월)+30일(4월)=89일

-평균임금

임금총액/총일수=798,499/89=8,971원이다.

-퇴직금

김영희 씨는 1983년 3월 10일에 입사해 1995년 7월 14일에 퇴사했다.

계속근로연수 산출방법

1983년 3월 10일- 1995년 3월 9일 : 12년

1995년 3월 10일- 7월 9일 : 4개월

1995년 7월 10일- 7월 13일 : 3일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계속근로연수×30=8,971×(12+4/12+3/365)×30=3,321,480원이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만약 기업주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 검찰에 넘겨지고 벌금을 물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퇴직금도 임금의 일부이므로 퇴직금 청구권도 최종 퇴직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